

No. 43173

**Republic of Korea
and
Algeria**

Agreement on econom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's Republic of Algeria. Seoul, 9 April 1997

Entry into force: *19 August 2000 by notification, in accordance with article 7*

Authentic texts: *Arabic, English and Korean*

Registration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: *Republic of Korea, 15 November 2006*

**République de Corée
et
Algérie**

Accord de coopération économique et technologique entre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et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'Algérie. Séoul, 9 avril 1997

Entrée en vigueur : *19 août 2000 par notification, conformément à l'article 7*

Textes authentiques : *arabe, anglais et coréen*

Enregistrement auprès du Secrétariat des Nations Unies : *République de Corée, 15 novembre 2006*

[KOREAN TEXT – TEXTE CORÉEN]

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간의
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

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(이하 “체약당사자”라 한다)는,
양 국가 및 국민간의 기존 우호관계에 유념하고,
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서 이러한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증진하기를 희망하며,
경제 및 기술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양국에 가져올 이익을 인식하여,
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

제 1 조

체약당사자는 가능한 한도안에서 자국의 법령에 따라 특히 투자증진 및 자본 · 기술자 · 기술정보의 상호 교류를 통한 경제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

제 2 조

1.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협력이 특히 공업, 광업, 에너지, 토지 및 수자원 개발, 상업, 금융, 농업, 농촌개발, 교통, 관광, 통신, 공학 및 여타 서비스 분야와 연관되어 있음을 인정한다.
2. 체약당사자는 협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분야를 상호 통보한다.

제 3 조

1.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관련기업 및 기관간 협력이 특히 다음을 통하여 제반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상호 관계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동의한다.

- 가. 공동관심 사업의 조사·준비 및 시행
- 나.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며 각자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, 양국 국민이 참여하고 신규사업이 될 수 있는 공동 활동
- 다. 대행기관의 선정
- 라. 제품의 매매

2. 계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방안을 개발하고, 다음과 같은 기술협력을 장려·촉진 및 증진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.

- 가. 각종 기술기관 및 산업체에서의 훈련을 위한 인적 교류
- 나. 제반 분야에서 상담역 또는 자문관으로서 전문 용역 제공
- 다. 구체적인 훈련계획과 관련된 기술장비의 제공
- 라. 연구원·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
- 마. 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

제 4 조

계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기초하여 이 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개별 사업에 관한 보조약정을 체결한다. 이 약정은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 협력 양식 또는 방법을 규정한다.

제 5 조

각 계약당사자는 타방 계약당사자의 전문가 및 계약자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하며,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시설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제 6 조

1. 계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하고, 이 협정의 적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토의하며, 이 협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권고를 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동의한다.
2. 공동위원회는 각 계약당사자 정부의 구성원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된다. 이 위원회는 계약당사자간 주요 협력분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.
3. 공동위원회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대한민국과 알제리에서 교대로 개최된다.
4. 공동위원회는 실무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으며 참관인으로서 이 회의에 참석할 전문가 및 자문관을 임명할 수 있다.

제 7 조

이 협정은 계약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헌법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알리는 상호 통보중 최종 통보일자에 발효한다.

제 8 조

1.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다.
2. 이 협정의 효력은 일방 계약당사자가 이 협정 종료 1년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으로 5년간 연장된다.